

19. 교원 연구년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8년 6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정년트랙교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연구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의 비전 성취를 위한 교수 개발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본교에서 강의와 출근의무를 면제받고 연구, 봉사, 강의 등과 관련된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단순 휴식만을 위한 휴가의 개념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2장 교원 연구년

제3조(자격)

① 연구년 수혜 교원의 자격은 신규임용일 혹은 직전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다만 2회차 이상의 연구년일 경우 직전 연구년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 3년간 그 자격이 연기될 수 있다.

② 휴직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교무위원, 부속기관장은 보직재임 기간 중에는 연구년을 수혜받을 수 없다.

제4조(기간)

① 연구년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구년 교원은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 신청서(서식 제2호)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치 않는다.

제5조(연구년 교원 선발 인원 및 제한)

① 연간 선발 연구년 교원 인원은 본교 전체 재직 정년트랙교원의 1/7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정년트랙교원 전원 동의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선발 할 수 있다.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연구년 신청에 필요한 근속년수는 본교 정년트랙교원으로 임용발령을 받은 날 또는 직전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휴직 및 해외연수중인 교원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년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교의 직무수행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년수로 인정한다.

제7조(신분 및 처우)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년 중인 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 ② 연구년 기간 동안에도 보수 전액이 지급되고 승급 및 승진이 가능하며 승진 소요기간 산정에 포함된다.

제8조(연구년 신청 예고) 교무처는 차기년도 연구년 신청에 관한 예고를 매년 9월에 한다.

제9조(신청 및 선정절차)

- ① 연구년을 부여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신청서(서식 제1호)와 연구년 계획서(서식 제3호), 강의대체계획서(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무처장은 자격 요건 및 연구년 신청서, 계획서, 강의대체계획서 등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회의록과 함께 교무위원회로 소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청자에 대해서는 교원인력수급 등 학사 진행의 원활성, 신청자의 자격, 연구 및 교육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무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선정한다.

제10조(선발기준 및 위원회 설치)

- ① 연구년 선발 기준은 연구년 수혜 횟수, 직전연구년 이후 근속년수, 직전 연구년 수행 평가 결과, 상위직급,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총장은 필요 시 연구년 교원 선정 및 결과물 심의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연구년 선정의 취소 및 제재)

- ① 개인사정에 의하여 연구년을 취소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시행 최소 3개월 이전에 연구년 취소신청서(서식 제6호)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에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경우 3개월 이전 취소 시 2년 이내, 3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3년 이내 연구년을 수혜받을 수 없다.
- ③ 총장이 인정하는 본교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에 연구년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년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후보 선정)

- ① 연구년 신청자가 수혜 예정자보다 많은 경우 연구년 수혜예정자의 취소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년 수혜예정자의 취소 시 예비후보자 중에서 연구년 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년의 시효)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해당기간에 연구년 전 기간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구년 교원은 교내.외의 교육기관에 출강할 수 없으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하고, 전문분야와 관련된 타 대학교, 연구기관, 학술단체에서의 연구 활동은 보장하며, 학생 논문지도는 가능하다.

2. 연구년 교원은 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3.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수혜기간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교에서 근속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복교 즉시 연구년 결과보고서(서식 제4호)를 제출해야 하며, 당해 학기에 연구년 수행 결과 발표회에서 결과를 발표한 후 최종 실적물을 복교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년 최종 실적물 평가 결과는 차기 연구년 선정에 반영된다.

제15조(준수사항) 연구년 수행 교원은 신청한 연구(활동)지와 연구(활동)분야에서 연구(활동)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활동) 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1/2 이전에 연구년 연구(활동)과제 변경신청서(서식 제5호)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소환)

① 연구년 교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환할 수 있다.

1. 기간 중 본교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2. 기간 중 의무이행에 태만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
3. 총장의 허가없이 소정기간을 초과했을 때
4. 기타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거나, 계속하여 연구년 지속유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연구년 기간 중이라도 본교의 교무형편상 불가피할 경우에 총장은 소환할 수 있다.

제17조(의무 위반자 제재)

① 연구년을 수혜한 교원이 제1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을 시에는 그 기간 중 지급된 보수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기간 중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소환됐을 때 그 기간 중에 받은 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제 16조 제 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년을 수혜한 교원이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차기 연구년 제한 등 불이익을 반영한다.

제3장 보 칙

제18조(규정관리 및 운영) 교원 연구년 규정은 교무처에서 관리 운영한다.

제19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필요시 교무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연구년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연구년연장신청서

(별지서식 제3호) 연구년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연구년결과보고서

(별지서식 제5호) 연구년 연구과제변경신청서

(별지서식 제6호) 연구년취소신청서

(별지서식 제7호) 국외여행신고서

(별지서식 제8호) 국외여행허가원

(별지서식 제9호) 강의 대체 계획서